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

제 정 : 1998. 03. 01

최근개정 : 2017. 11. 08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목원대학교 산업정보언론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에 관한 세부 시행 세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취득자격) ① 소정의 등록을 마치고 다음 각 호의 과정에 합격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1.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취득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B 이상인 자.
3. 소정의 종합시험 및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단, 논문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3학기 중 지도교수 면담후 지도교수의 논문 지도 과목을 연구지도로 대체하여, 4학기부터 추가로 6학점을 취득하고 연구 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30학점을 취득하고 학위취득시험에 합격하고 연구 보고서를 제출한 자.

4. 수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휴학기간은 제외)

② 논문작성과 학위취득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과별로 내규를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제3조(학위수여자 사정) 산업정보언론대학원장은 학위수여 대상자를 산업정보언론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위수여 자격을 사정한다.

제4조(학위 수여) 학위수여자 사정에 통과된 자에게는 산업정보언론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은 학위를 수여한다.

제5조(학위수여종별) 본 산업정보언론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다음과 같다.[2015.10.21.개정][2016.05.25.개정][2017.11.08.개정]

건축공학과	공학석사
도시공학과	공학석사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전자·정보통신공학과	공학석사
디자인학과	디자인학석사
스포츠건강관리학과	체육학석사
소방학과	이학석사
향장학과	이학석사
e-business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공공관리학과	행정학석사